보도설명자료

计引 医蜂桃 计执照者 吉州 登林 考则中华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8. 18.(목)
담당 부서	금융혁신기획단	책임자	과 장 김종훈(02-2100-2970)
	전자금융과	담당자	사무관 이은진(02-2100-2971)

「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」는 기사내용은

사실과 다릅니다.

- 전자신문 8월 18일자 보도 관련 -

1. 기사내용

- □ 전자신문은 8월 18일 「금융위 법안 개정...'카톡 송금하기' 금지」제하의 기사에서.
- "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(이하 전금법)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.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'초유의 족쇄규제'가 될 가능 성이 커졌다.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"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내용

- 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·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「전자 금융거래법」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'20.11월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.
- □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**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**할 수 있으며, **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**도 **자금이체업 허가**를 받아 **송금업무 영위가 가능**합니다.

- □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**안의 보완 필요성 등**에 대해 **자금이체업**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**다각적으로** 검토중에 있으며,
- **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**될 수 있도록 **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** 임을 알려드립니다.

